

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

● 2009년 감사원 감사(2009. 3. 30 ~ 4. 14)

구 분	지 적 사 항	처 리 결 과
문 책	<input type="checkbox"/>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 산정 및 출연 ○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산정할 때에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」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해야 하나,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편법 산정하여 '07년의 경우 418,719천원, '08년의 경우 2,053,499천원만큼 과다 출연	○ 관련자 징계 의결 : 건책 1명, 불문경고1명(2009.7.27)
주 의 통 보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남 화원관광단지 골프장 등 조성업무 추진 부적정 ○ 해남 화원관광단지 골프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전라남도와 재원부담이건으로 관광단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차질을 빚고 있으며, 관광단지 내 골프코스 및 축구연습장 등 준공 후 미운영하고 있으며, 구체적인 건축규모 확정 전에 건축 실시설계로 예산을 낭비함	○ 하수처리시설 재원확보 관련 유관기관 협의중 ○ 골프장 및 전지훈련장 정상화 방안 마련하여 추진중 ○ 관련자 주의 촉구 (2009.7.21)

구 분	지 적 사 항	치 리 결 과
통 보	<input type="checkbox"/> 명예퇴직 관련 규정 불합리 ○ 징계 요구중인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자체 명예퇴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명예퇴직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명예퇴직수당 129,802천원을 지급	○ 관련 규정(인사규정시행세칙) 개정(2009.8.17)
통 보	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지사 업무실적 과장 평가 및 과다 설치 ○ 공기업 평가업무의 하나로 “해외진흥활동을 통한 외래객 유치실적”, “효과적인 한국관광 홍보활동” 등 해외지사 업무실적을 평가하면서 편법을 동원하여 과다 산정 ○ 관광경쟁국인 태국, 말레이시아 등보다 많은 5개, 6개의 지사를 일본과 중국에 설치·운영	○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지사 평가 개선 및 재배치 추진 - 연구용역 공고 및 업체선정(2009.8) - 연구용역실시(2009.9.-12) - 해외지사 성과평가 개선 및 직무분석, 재배치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, 추진(2009.12-2010.2)

구 분	지 적 사 항	치 리 결 과
주 의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한국관광카드 사업권 매각 등 업무처리 부적정</p> <p>○ 한국관광카드(KTC)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 제정, 공포된 「전자금융거래법」을 적기에 검토하지 못하여 사업권 매각 기회를 잃고 KTC 자재 구매예산을 낭비</p>	<p>○ 관련자 주의 촉구 (2009.7.21)</p>
시 정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광진흥개발기금 국고보조금 정산 부적정</p> <p>○ ‘관광사업 정보체계 구축’ 사업을 완료하고도 문화체육관광부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3년 3개월이 지난 2009년 3월 현재 집행잔액 60,916,908원(이자 2,595,390원 포함)을 보관 하는 등 30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놔둠</p>	<p>○ 사업비 집행잔액 국고반환 완료 : 24개 사업</p> <p>○ 나머지 6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산서류 검토중</p>

구 분	지 적 사 항	치 리 결 과
주 의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한국관광브랜드 구축 용역 검사업무 처리 부적정</p> <p>○ 한국관광브랜드 구축용역 중 당초 계약인 77종이나 실제 납품은 10종이 부족한 67종의 응용디자인을 제작·납품하였음에도 그대로 인정</p>	<p>○ 응용디자인 10종 추가납품 완료(2009.7.25)</p> <p>○ 관련자 주의 촉구(2009.7.21)</p>
주 의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면세점 상품공급계약업무 처리 부적정</p> <p>○ 면세점 상품공급계약 업무와 관련 위·수탁판매계약서를 매매계약서로 오인할 소지가 있도록 작성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남기는 등 미숙한 처리</p>	<p>○ 2008.3월 이후 면세상품공급계약서에 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음.</p>

구 분	지 적 사 항	치 리 결 과
주 의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부적정</p> <p>○ 기획재정부 지침 등에 따라 2007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정당한 계 산정 한 경영평가 성과급 총 10,343,489천 원보다 총 391,546천 원(총 733명, 1인당 534천 원 상당)만큼을 더 많이 지급</p>	<p>○ 성과급 지급 관련 규정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 개정(2009.9.28) - 변경기준 적용 성과급 지급(2009.9.28)
시 정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자금 대출 및 사택 대여 부적정</p> <p>○ ‘주택자금 대부요령’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금을 신청하여 지급받 은 직원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중도상환토록 하고, ‘사택대여요령’ 규정을 위반하여 전세보증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직원으로부터 사택 전세보증금을 회수토록 함.</p>	<p>○ 주택자금 119,542,000원 및 사택 전세보증금 108,000,000원 회수 완료</p>